

구미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12.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상수도요금체계 개선추진지침과 환경부 상수도요금 합리화 방안에 관한 개선지침에 따라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상수도요금표의 업종을 통·폐합하고 단계 및 요금을 효율적으로 조정 개선하여 요금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 수자원공사의 정수, 침전수, 댐용수료 인상으로 인한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추가재원을 확보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수도요금기준중 업종을 종전 6개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적용 단계와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을 일반용으로 통합조정
 - 단계를 가정용 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 일반용은 5단계 통합 조정
- 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30조
- 수도법 제23조

구미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수도급수조례”를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규정중 “100분의 5”를“100분의 3”으로 한다.

제47조제3항중 “영업용”을“일반용”으로 한다.

제1조 및 제9조제1항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고, 제9조제2항중 “수도법시행령”을 “「수도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중 “건설산업기본법”을“「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제14조제1항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의료보호법”을“「의료보호법」”으로 하며, 제33조제2항중 “계량에관한법률”을 “「계량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1조제1항1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동조동항제2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2 내지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상 수 도 요 금 표(조례 제29조 관련)

업 종 별 사 용 요 금 (단위 :m³)			
업종별	단 계 별	요 금	비 고
가정용	0~20m³(1단계)	280	
	21~30m³(2단계)	390	
	31m³ 이상(3단계)	720	
일반용	0 ~100m³(1단계)	460	조례 제46조 제3항 및 제47조, 제39조의 일시 급수의 경우 최고 요율 적용
	101~300m³(2단계)	640	
	301~1,000m³(3단계)	800	
	1,001~2,000m³(4단계)	900	
	2,001m³ 이상(5단계)	990	
욕탕용	0~1,000m³(1단계)	890	
	1,001~1,500m³(2단계)	990	
	1,501~2,000m³(3단계)	1,090	
	2001m³ 이상(4단계)	1,150	
전 용 공업용	계약m³당	250	
	초과m³당	381	

[별표3]

업종별 구분표(조례 제30조 관련)

업종별	구분내역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 및 지압업소
일반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급수
욕탕용	· 목욕장업(「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필한 목욕장) 단, 바닥면적(탈의실, 욕실, 욕조포함)이 300㎡ 이하인 목욕장은 일반용
전용공업용	·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별도 설치한 전용관에 의한 급수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u>구미시수도급수조례</u> 제14조(공사비의 납부)①생략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의 납부기간은 15일간으로 하며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급수공사비는 선납으로 40퍼센트를 납부하고 그 나머지는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내 납부치 않을시에는 <u>100분의 5</u>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이하생략 제47조(상수도시설훼손 및 누수에 대한 책임) ①~②생략 ③제1항에 의한 누수량의 요금은 <u>영업용</u> 최고요율을 적용한다.	<u>구미시 수도급수 조례</u> 제14조(공사비의 납부)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u>100분의 3</u> ----- -----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상수도시설훼손 및 누수에 대한 책임) ①~②현행과같음 ③----- --- <u>일반용</u> ----- ---	[제명] 제명변경 및 띄어쓰기 적용 가산금 하향조정 업종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별표2]				[별표2]				
상수도요금표				상수도요금표				
업종별사용요금 (단위 :m³)				업종별사용요금 (단위 :m³)				
업종별	단계별	요금	비고	업종별	단계별	요금	비고	
가정용	0~10m³(1단계)	240		가정용	0~20m³(1단계)	280		
	11~20m³(2단계)	320			21~30m³(2단계)	390		
	21~30m³(3단계)	390			31m³이상(3단계)	720		
	31~40m³(4단계)	530						
	41~50m³(5단계)	640						
	51m³이상(6단계)	770						
업무용	0~20m³(1단계)	380		일반용			조례 제46조 제3항 및 제47조 제39조의 일시급수의 경우 최고요율 적용	
	21~50m³(2단계)	430						
	51~100m³(3단계)	560						
	101~300m³(4단계)	650						
	301m³이상(5단계)	800						
영업용	0~30m³(1단계)	480	조례 제46조 제3항, 제47조 제39조의 일시급수의 경우 최고요율 적용		0 ~100m³(1단계)	460		
	31~50m³(2단계)	620			101~300m³(2단계)	640		
	51~100m³(3단계)	800			301~1,000m³(3단계)	800		
	101~300m³(4단계)	950			1,001~2,000m³(4단계)	900		
	301m³(5단계)	1,000			2,001m³이상 (5단계)	990		
1 중 욕탕용	0~200m³(1단계)	400		욕탕용	0~1,000m³(1단계)	890		
	201~300m³(2단계)	500			1,001~1,500m³(2단계)	990		
	301~500m³(3단계)	650			1,501~2,000m³(3단계)	1,090		
	501m³이상(4단계)	900			2001m³이상 (4단계)	1,150		
2 중 욕탕용	0~200m³(1단계)	500		전 용 공업용	계약m³당 초과m³당	현행과 같음		
	201~300m³(2단계)	700						
	301~500m³(3단계)	850						
	501m³이상(4단계)	1,100						
전 용 공업용	계약 m³당 초과 m³당	250 381		전 용 공업용	계약m³당 초과m³당	현행과 같음		
※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m³당 요금임.								

현행			개정		
【별표3】업종별구분표			【별표3】업종별구분표		
업종별	구분내역		업종별	구분내역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등의 소매점으로 면적이 10㎡ 미만의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 · 고아원, 영아원, 양노원, 탁아소, 원호단체, 사회 복지시설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 및 지압업소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 및 지압업소	
업무용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업소(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중 해당업체) · 사설소화전 · 정미소(농산물 가공) · 관공서, 병원, 군부대,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및 단체(생산, 제조용수 제외) ·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사회단체(사회단체 등록된 공익단체) · 어린이놀이방, 유아원, 유치원, 어린이집 · 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 및 지사무소(단위조합 포함) ·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탑에서 급수하는 것	· 사용량×최종단계를요율	일반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급수	
영업용	· 식품접객업, 공연장, 유키장(게임방, 전화방, PC방),노래방 · 숙박업(여인숙 제외) · 백화점, 도매업, 대규모소매점(창고업포함) · 자동차정비업소,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류 판매업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여행사포함), 음식점 · 사설학원(교습소 제외) · 사진현상소, 사진관(촬영만하는 업소 제외) · 금융기관(은행, 보험, 증권, 투자신탁, 사설신용금고)	· 전당포제외			

현행			개정	
업종별	구분내역	비고	업종별	구분내역
영업용	· 양조업, 제빙업, 냉동업, 냉장업, 식품제조가공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사료제조업(가축·가공, 도살업 포함) · 체육시설(체육도장, 탁구장 제외) · 공사를 목적으로 시공중인 건물(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축물로 입주전까지)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가설 건축물) · 운반급수 · 별도급수전에 의한 선박의 급수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 법령(의료법, 안마사에 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의 안마시술소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태	· 최종단계 효율적용 · “ · “ · 욕탕2종 적용제외		
욕탕 1용	· 일반대중탕			
욕탕 2용	· 특수목욕장업 · 바닥면적 100㎡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		욕탕용	· 목욕장업(「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필한 목욕장) 단, 바닥면적(탈의실, 욕실, 욕조포함)이 300㎡ 이하인 목욕장은 일반용
전용공업용	·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전용관에 의한 급수		전용공업용	·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전용관에 의한 급수

현행			개정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		
구경별	요금	비고	구경별	요금	비고
13 mm	760		13 mm	900	
20 mm	2,130		20 mm	2,520	
25 mm	3,420		25 mm	4,040	
32 mm	6,090		32 mm	7,180	
40 mm	10,280		40 mm	12,110	
50 mm	15,770		50 mm	18,580	
80 mm	43,880		80 mm	51,640	
100 mm	65,210		100 mm	76,810	
150 mm	142,090		150 mm	167,310	
200 mm	201,820		200 mm	237,590	
250 mm	272,220		250 mm	319,480	
300 mm	328,290		300 mm	386,500	
350 mm	413,240		350 mm	484,750	
400 mm	449,730		400 mm	528,810	
500 mm	534,680		500 mm	622,420	
500mm이상	850,000		500mm이상	1,002,500	
※ 구경별 정액요금은 매 전당요금(공동주택인 경우 세대별 정액요금)			※ 공동주택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조례 제 35조 제4항 각호적용		